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8. . . (제 회)	

건 축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8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법률 제 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, 무허가 축사 등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, 허가·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10조의2를 적용하여 적법화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및 허가·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(안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대통령령 제 호

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중 “제1항 각 호”를 “제1항 각 호 및 제3항 또는 10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건축정책과	
연 락 처	044-201-4837